

경운대학교 융합전공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 및 연계·융합전공교육위
원회규정에 의한 융합전공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청자격) 신입학자는 2학기부터, 편입학자는 1학기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.5이
상인 자로 한다.

제3조(신청시기) 신입학자는 2학기부터, 편입학자는 편입당해 학기, 매 학기말에 신청한
다.

제4조(신청방법) ① 융합전공의 신청은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하며 매 학기 말에 신청한
다.

② 융합전공 주임교수는 융합전공 신청자를 일괄 심사한 후 허가자 명단을 교무
처에 통고 한다.

③ 교무처에서는 융합전공 이수 허가자 명단을 최종 결정하여 이를 게시 및 대
학에 통보한다.

④ 융합전공 이수는 허가받은 다음 학기부터 시작한다.

제5조(대상과목) ① 융합전공 운영 시 기존의 개설과목을 활용하도록 하며, 신설과목 개
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목명과 교과목 개요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
하며,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.

② 학부에서 개설되는 과목만으로 교과과정의 편성이 어려운 경우 일반대학원,
전문대학원,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포함하여 편성할 수
있다.

제6조(학점이수) ① 전공이수학점은 융합전공과목 42학점 이상으로 하되 각 융합전공별
운영위원회에서 해당전공에 대한 최소전공이수학점을 결정한다.

② <삭제>

③ 주전공(제1전공)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융합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교차
인정 범위는 최소전공 이수학점의 1/2이내로 한다.

④ 융합전공 이수허가 이전에 이수한 융합전공의 과목도 융합전공과목 학점으로

인정한다.

제7조(교과과정) ① 교과과정상의 편성 학점 수는 융합전공 이수 학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최소 48학점 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교양영역의 교과목도 편성할 수 있다.

③ <삭제>

④ 융합전공 교과과정 편성은 각 분야별 교과목을 골고루 이수하도록 한다.

⑤ 영역별 교과목 구성은 2개 이상의 학부(과)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.

⑥ 해당 융합전공 교과과정에서 선수과목을 지정 편성할 수 있으며, 전공필수과목 편성을 각 융합전공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필수로 이수토록 할 수 있다.

제8조(이수기간) 주전공학부(과) 졸업시까지 이수하여야 하며, 융합전공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융합전공을 이수할 때까지 주전공학부(과)의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.

제9조(이수제한) 주전공 외에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서만 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융합전공만을 단일전공으로 하여 졸업할 수 없다.

제10조(이수포기) ① 융합전공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말까지 “융합전공 취소신청서”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

② 융합전공을 포기한 경우 그 동안 이수한 융합전공과목 학점은 과목 이수구분에 따라 교양, 자유선택과목 학점 또는 본인의 희망할 경우 부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11조(주임교수) 융합전공 주임교수는 해당 융합전공별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교무처장을 경유 총장이 임용한다.

제12조(개설심의) ① 계열, 학부에서 제안한 융합전공의 타당성은 “연계·융합전공교육위원회”에서 심의한다.

② “연계·융합전공교육위원회”는 매년 1회 제안된 융합전공 신설 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의하며, 기존의 융합전공의 실적을 평가하여 폐지 또는 존속에 대하여 심의한다.

③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위원회에서 전공폐지를 심의한다.

1. 전공신청인원 3개학기 연속 10명 미만
2. 전공이수인원 3개연도 연속 5명 미만

3. 전공 운영방침에 따른 예외 가능

제13조(학위수여) ① 융합전공 이수자에게는 졸업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주전공학부(과)의 학위명과 융합전공의 학위명을 병행 표기한 1개의 학위증서를 수여한다.

② 융합전공 중도 포기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된 당해학기에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.

제14조(증명발급) 재학 중 발급되는 증명서에는 주전공학부(과)와 융합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발급한다.

제15조(학칙적용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